##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경숙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135

발의연월일: 2025. 2. 13.

발 의 자: 강경숙·서왕진·신장식

김선민 · 김재원 · 황운하

정춘생 · 김준형 · 차규근

이해민 • 백선희 의원

(11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인권 보호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그런데 교원이 중대한 신체적·정신적 질환을 겪는 경우, 학생에 대한 보호가 불가피한데 이에 대한 제도적 허점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최근 대전 소재 초등학교에서 일어난 '하늘이 사건'으로 인해 사회적으로 큰 충격에 빠지면서 이에 대한 법적·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이에, 교원이 중대한 신체적·정신적 질환으로 학생 보호 및 교육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교장은 이를 지체 없이 교육감에게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하여 학생과 교사 모두를 보호하고 공교육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20조의3 신설).

법률 제 호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초·중등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3을 제20조의4로 하고, 제20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3(교육감에 대한 보고) ① 교원이 중대한 신체적·정신적 질환으로 학생 보호 및 교육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교장은 이를 지체 없이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고 내용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lt;신 설&gt;</u>	제20조의3(교육감에 대한 보고)
	① 교원이 중대한 신체적・정
	신적 질환으로 학생 보호 및
	교육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교장은 이를 지체 없이 교육감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고 내용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
	<u>부령으로 정한다.</u>
제20조의3(교원 개인정보의 보호)	제20조의4(교원 개인정보의 보호)
(생 략)	(현행 제20조의3과 같음)